

우정사업 공사화에 따른 인건비 변동요인 분석

김 병 근*

통신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최근 정부는 우정사업을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우정사업의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 1997년부터 공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우정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우정사업의 과제와 공사 전환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어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나타난 인건비와 인건비성 비용을 사업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정사업을 공사로 전환시킬 경우에 발생할 인건비 변동요인에 대해 체신공무원의 임금현황 분석과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공사 전환시 발생할 인건비 증가로 인한 예산부담을 예상하여 보았다.

I. 머리말

정부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우정사업은 정보·통신 등 관련 기술의 발달, 이용주체의 변화, 민간 사송업체의 시장 잠식, 금융의 개방화 등 사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성만 강조되고 기업성은 거의 무시되어 자율성에 바탕을 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우편사업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누증과 체신금융의 성장 둔화, 이용자들의 불편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우정사업의 경우 문제가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고 심각한 편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 인식에 근거하여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은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동안 등한시되어 왔던 기업성의 합리적인 조

화를 이루어 우정사업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우정사업을 정부기업형태를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자율성을 제고할 것인가, 또는 우정사업 경영관리체제를 공사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검토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체신부는 우정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그동안 경직되게 운영되어 왔던 우정부문의 인력, 예산, 상품 등의 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하여 우편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현재 원가보상율이 57%에 머무르고 있는 우편요금을 1997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우정사업의 자율경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면서 공사

* 필자는 이 글의 집필에 많은 도움을 준 최중범, 박재석 책임연구원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¹⁾ 이어 대통령령이 지난 8월 22일 만국우편연합(UPU) 제 21차 총회에서 우정사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우정기구를 1997년부터 공사화 할 예정이라고 천명하기에 이르렀다²⁾.

그런데 우정사업은 노동집약적인 사업특성으로 인해 인건비의 점유비율이 높다. 최근 우편사업의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 등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비하여 요금수준이 크게 못미치는 데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공사화 전환에 있어서도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우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사화를 통한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 우정사업의 공사화 전환시 인건비 변동 요인 등에 대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 제 II장에서는 우정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우정사업의 경영자율성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우정사업의 공사화 전환 배경과 과제를 살펴 보았다. 제 III장은 우정사업비를 예산과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며, 이어 제IV장에서는 우정사업을 공사로 전환시킬 경우에 발생할 인건비 변동요인을 체신 공무원의 임금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실제 공사 전환시 발생할 인건비 증가를 예측하여 보았다. 그리고 제V장을 통해 앞으로 연구·검토하여야 할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는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은 우정사업 전체(즉, 우편사업, 체신금융사업, 수탁사업)가 공사로 전환할 경우를 가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II. 우정사업의 경영관리체제의 공사화 전환 배경

1. 우정사업의 현황과 과제

우정사업은 우편사업, 체신금융사업, 수탁사업으로 대별되고 있다. 우편사업은 전국적인 우체국망 확장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본통신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과 컴퓨터 등 대체통신 수단의 발달과 민간 사송업체의 진입으로 우편시장의 잠식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며, 우정사업 자체가 노동집약적 사업으로써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공성 위주의 사업경영 때문에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체신금융사업은 전국에 고루 분포된 우체국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농간 균등한 금융혜택을 부여하고 서민금융을 위한 소액가계저축 증대 등 대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조성된 자금은 농어촌구조조정, 중소기업육성, 첨단기술개발, 도로확장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 재원으로 지원하여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상품개발의 자율성과 상품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제도 개선이 미흡하여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1) 우정사업 현황

현재 우리 나라 우정사업은 체신부를 운영주체로 한 정부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신공무원의 정원은 체신부 531명을 비롯하여 34,394명이다³⁾. 이는 1983년 정원 28,820명에 비해 5,574명이 증가한 것이다. 직종별 인력구성을 보면 정무직 2명, 일반직 10,686명, 기능직 23,555

1) 체신부, 『체신백서』, 1993. 10, p.5.

2) 조선일보, 1994. 8. 23, 3면

3) 체신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 제14252호), 1994. 5. 4.

명, 별정직 151명으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직의 비중이 전체 정원의 68.5%로 타직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정사업의 조직은 체신부 본부의 우정국과 체신금융국 그리고 체신부의 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업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업기관은 1992년말 현재 8개 체신청을 비롯하여 총 3,414개이며, 이 가운데 민간에 체신업무를 위탁한 성격을 가진 별정우체국과 취급소는 각각 779개, 588개이다. 별정국은 체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부담으로 청사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별정우체국법)이며, 우편취급소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계약내용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이때 체신창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가 바로 우편취급소이다. 1992년 현재 1국당 관할면적은 29.0Km² UPU권장기준인 1국당 20~40Km²의 범주에 들며, 1인당 관할 인구수는 1992년 현재 12,700명으로 1986년 14,600명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아

직도 UPU권장기준인 3,000-6,000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정사업의 주요 현황과 추이는 <표 1>과 같다. 우편요금 수입은 1992년말 현재 4,245억 2,200만원으로 1983년 1,091억 500만원에 비하여 약 3.9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우편수입의 국내와 국제의 비율은 87.5% 대 12.5%이고 보통통상은 전체수입의 61.1%, 특수통상은 19.8%, 소포는 6.6%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우편물량은 1992년말 현재 28억 4,200만 통으로 1983년 11억 3,100만 통에 비하여 약 2.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0%내외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우편과 국제우편의 비율은 98.8% 대 1.2%이고, 국내우편물 중 각종별 구성비는 제 1종 59.9%, 제 2종 12.6%, 제 3종 17.7%, 제 4종 4.0%, 무료 0.6%, 특수통상 4.7%, 소포 0.6%이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연간 우편이용량은 65.1통으로, 미국의 1인당 이용량 652통, 일본의 202통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4차례 실시된(1982년, 1985년, 1988년,

<표 1> 우정사업 현황과 추이

구 분		1983년	1988년	1992년
조직, 인력	정 원(명)	28,820(100)	29,691(103)	34,120(118)
	현업관서(개)	2,174(100)	3,191(147)	3,414(157)
우편사업	우편물량(백만통)	1,131(100)	1,859(164)	2,842(251)
	우편요금 수입(백만원)	109,105(100)	232,252(213)	424,522(389)
체신금융사업 ¹⁾	체신예금 잔고(백만원)	290,860(100)	2,489,026(856)	44,508,850(1,530)
	국내우편환 실적(억원)	10,189(100)	12,666(154)	5,368(65)
	국제우편환 발행(달러)	38,916(100)	66,892(172)	117,551(302)
	국제우편환도착(천달러)	14,082(100)	53,937(383)	60,641(431)
	우편대체 잔고(백만원)	167,255(100)	411,837(246)	752,633(450)
	체신보험료(백만원)	2,159(100)	43,181(2,000)	114,502(5,303)

주1) 체신금융 사업은 1993년말 현재임(체신부 내부자료)

자료: 체신부, 『체신통계연보』, 각년도.

〈표 2〉 우정사업 재정수지 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우편영업			금융영업		
	수익 ¹⁾	비용 ²⁾	손익	수익	비용	손익
1983	105,802	135,029	-29,227	30,958	16,693	14,265
1988	217,807	254,075	-36,268	277,728	304,026	-26,298
1989	241,979	299,841	-57,862	301,727	305,292	-3,565
1990	294,097	367,278	-73,181	348,828	346,305	2,523
1991	352,014	436,391	-84,377	425,178	411,144	14,034
1992	402,725	504,134	-101,409	524,283	464,684	59,599
구분	수탁영업			우정사업전체		
년도	수익	비용	손익	수익	비용	손익
1983	108,348	72,257	36,091	245,108	223,979	21,129
1988	54,034	14,557	39,477	549,569	572,658	-23,089
1989	58,913	15,189	43,724	602,619	620,322	-17,703
1990	62,041	13,581	48,460	704,966	727,164	-22,198
1991	78,736	12,472	66,264	855,928	860,007	-4,079
1992	113,731	12,715	101,016	1,040,739	981,533	59,206

주1) 수익은 통신사업특별회계 결산상의 수납액

2)비용은 체신통계연보상의 사업별 원가액

자료: 체신부, 『체신통계연보』, 1993.

1991년) 우편서비스 결과에 의하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다. 이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는 이용자 욕구에 우편사업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신금융은 현재 보통예금을 비롯한 저축성 상품 8종류, 환매채, 우편환, 우편대체와 교육보험 등 14종류의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축시장에서 체신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말 현재 총예금 중 3.3%를 점하고 있다⁴⁾

체신예금은 1993년말 현재 1,176만 6,181건, 4조 4,507억 9,900만원이다. 우편환 이용실적을 보면 국내우편환은 1993년말 현재 439만 1천건, 5,368억원으로 1990년 560만 7천건, 1조 300억원

에 비해 이용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국제우편환이용실적은 1993년말 현재 발행건수, 646건, 금액 118천달러이며, 도착건수는 51,885건, 금액 60,641천 달러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⁵⁾ 우편대체 이용현황을 보면 1993년말 현재 60,360명의 가입자, 1,337만 8천건, 금액 2,304억 5100만원이다. 체신보험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

4) 참고로 체신금융의 개인 저축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인데 비하여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은 10-20%수준이며 일본과 이탈리아 20-30%, 그리고 아일랜드는 30% 이상이다. 남찬기 옥주영 유경학, 『외국의 국영금융의 동향과 체신금융 발전방향』, 1992. 12, pp.57-58.

5) 은행의 경우 미화 5,000달러 이하의 대외송금은 자유화되어 있는 반면, 체신관서는 외국환관리법상 대외송금범위가 12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다.

는 국영보험사업으로 매년 급속한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993년말 현재, 유지건수는 113만 3천건, 보험료는 1조 1,450억원이며 보험기금은 2조 1,03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채신금융은 국영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채신예금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을 채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1992년말 현재 국·공채 및 재특 등 정책자금운용이 46.6%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수지는 1992년의 경우 우정사업전체가 592억 600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 사업별로 살펴보면 우편영업수익은 1,014억 900만원 적자이며 금융영업수익이 595억 9,900만원, 수탁영업수익이 1,010억 1,600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근년들어 우편사업의 적자의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지고 있으며 우편사업의 적자는 금융영업수익, 수탁영업수익, 지원수익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우편사업의 적자의 주된 요인은 공공성 위주의 경영에 따른 사업운용의 신축성부족과 원가

에 훨씬 못미치는 낮은 수준의 우편요금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 1종과 제 2종 우편물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원가보상율이 낮다. <표 3>에서 보듯이 종별 원가보상율에 있어 상업광고가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을 주대상으로 하는 제 3종의 원가보상율이 극히 낮고, 수익자 부담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부가가치 서비스인 특수통상의 원가보상율 또한 제 1종의 원가보상율에도 못미치고 있다.

2) 우정사업의 과제

우정사업의 과제는 구체적으로 자율성확보를 통한 예산, 인력, 상품운용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신규서비스의 개발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 기계화·자동화·전산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는 기존의 연구결과⁶⁾를 토대로 우정사업의 문제와 환경변화 그리고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6) 기존의 연구결과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이진용·신동욱·최중범, 『우정사업 경영실태분석 및 합리화 대책』, 1991. 12.

남찬기·박재석·옥주영, 『금융개방화추세에 대비한 채신금융의 기본전략』, 199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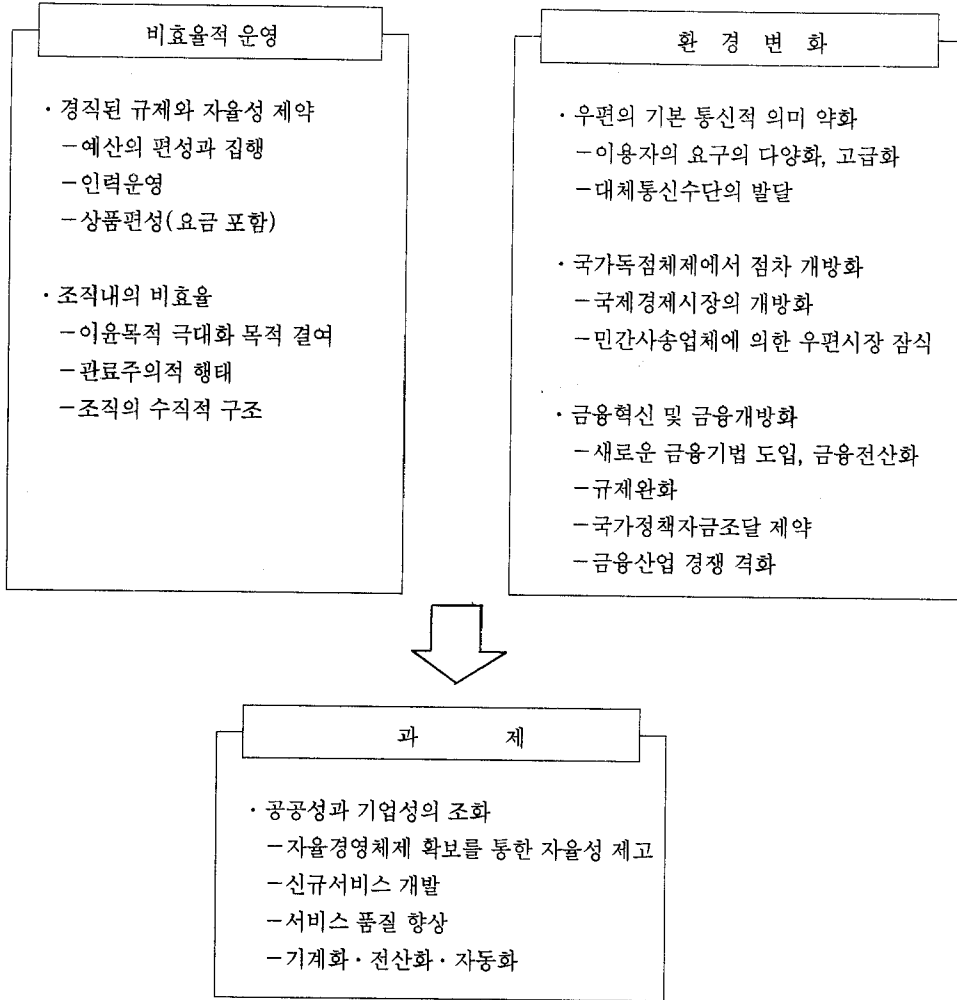
<표 3> 1993년 국내우편물 요금의 종별 원가보상율

(단위: %)

구분	제 1종	제 2종	제 3종	제 4종	소포	일반등기
보상율	84.92	98.24	30.52	30.73	62.64	71.86
구분	보험등기	대금교환	내용증명	배달증명	속달	국내항공
보상율	37.43	21.42	37.74	28.23	38.56	38.84
구분	특사배달	국내특급	특별송달	민원우편	자루배달	전자우편
보상율	40.77	32.49	28.83	39.02	22.43	48.73

자료: 통신개발연구원, 『우편종별체계 개편 및 국제요금 정상제도 변경에 대비한 우편 물 종별 비용분석』, 1994, p.116.

[그림 1] 우정사업의 과제



2. 우정사업의 공사 전환 배경

우편사업은 공평성과 개방성을 근간으로 한 공공성이 강조되어 국민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기본통신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신금융사업은 국영금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정사업의 환경변화와 경영의 자율성 제약으로 우편사업의 재정적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재정 적자 누

증의 문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우편사업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이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최근 들어 우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기업성을 강조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막상 실행정도는 미흡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우편사업의 적자가 누증되고, 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현대화, 효율화를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렵고, 사송업자에 의한 우편시장의 잠식, 우편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되지 못하고 우정사업 전반에 새로운 상품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현재 우정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요약하면 사업의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과정, 조직의 운용과 인사제도, 요금의 결정과 상품의 편성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우정사업의 특성을 거의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경직된 규제와 자율성 제약이라는 외부적 요인⁷⁾과 특정사업이 정부기업형태로 운영될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 즉, 이윤극대화 목적 결여, 관료주의적 운영행태, 그리고 조직의 수직적 구조가 야기하는 내부적 비효율이 상호작용을 통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나라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특히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미국, 영국, 스웨덴은 정부기업에서 공사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 등은 정부기업형태로 유지하되 예산, 조직, 인사, 요금결정 등에서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방안이 보다 적합한가는 각국의 상이한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⁸⁾. 우정사업의 경영관리체제의 형식적인 틀(정부기업 또는 공사) 보다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이루내기 위한 자율성 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공공성과 재화 및 서비스를 최소비용으로 생산한다는 효율성, 기업성은 상호 상반되는 두가지 성격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이를 얼마나 잘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의 출발은 경영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다. 공사화로의 전환이 이루어

진다고 하여도 현재 조직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보다 쉽게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사화가 실현된다면 직원에 대한 급여상의 조치, 별정우체국제도 도입과 같은 것은 회사내의 조치로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정부기업(부처)형태가 갖고 있는 단점인 인사, 예산상의 경직성, 사업성의 결여 등이 공사조직에서는 크게 완화되어 직원의 창의성을 보다 용이하게 발휘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올리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III. 인건비 분석

1. 세출예산의 인건비 분석

체신부는 예산회계법 제 12조에 따라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통신사업특별회계와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 특별회계를 편성·집행하고 있다. 또한 체신보험 특별회계법 및 동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는 체신보험 기금에 대하여 회계를 구분·관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94년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우정사업의 인건비만을 분석하기 위해 세출예산중에서 사업

7) 이진용·신동욱·최중범, 『우정사업 경영실태분석 및 합리화대책』, 1991. 12 pp.98-109.

8) 특정사업에 정부가 개입하여 사업을 정부기업 내지는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데는 집권정부의 이념적 성향, 정체변동에 따른 불가피성, 정부의 정치적 세력확보 목적 그리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분야에서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등 상이한 동기가 있다.

송대회 『한국의 공기업 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89, pp.26-31.

비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비목별, 사업별 인건비 분석에 앞서 1994년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표 4>와 같이 전체예산에서 사업비(우정사업비)가 88.75%, 일반관리비가 6.23%, 사업의 비용이 3.30%, 전출금 및 예비비가 각각 1.50%, 0.22%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금 액	구성비
장	항 및 세항		
사업비용	공통영업비	656,609	47.64%
	우편영업비	218,046	15.82%
	채신금융영업비	328,889	23.86%
	수탁영업비	2,390	0.17%
	감가상각비	17,289	1.25%
	소 계	1,223,223	88.75%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85,493	6.20%
	감가상각비	420	0.03%
	소 계	85,913	6.23%
사업외비용	전파사업비	29,157	2.12%
	부대사업비	12,164	0.88%
	감가상각비	4,119	0.30%
	소 계	45,440	3.30%
전 출 금		20,713	1.50%
예 비 비		3,000	0.22%
예산총액		1,378,299	100.00%

자료: 체신부, 『1994년도 예산서(통신사업특별회계)』, 1994

그런데 우정사업 관련 인건비는 사업비에 대부분 편성되어 있고, 일반관리비 가운데 본부의 우정관리, 채신금융관리 부분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다⁹⁾. 그러나 이 글에서는 체신부 본부 인력 중 우정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우정관리, 채신금융관리 부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일반관리비 중 우정사

업과 관련된 인건비와 사업비 등 예산을 분리해 내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비와 전출금을 제외한 세출예산 가운데 사업비가 전체예산의 90.31%에 달하기 때문에 사업비만을 대상으로한 인건비 분석도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1) 비목별 인건비 분석

사업비에 나타난 인력은 일반직 9,486명, 기능직 22,749명, 별정국 5,216명, 청경 44명 등 총 37,495명과 기타 비정규직(일용잡급직)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사업비에 나타난 인력현황은 <표 5>과 같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파악하기 위해 예산을 비목별로 재구성하면 <표 6>과 같다. 경제기획원의 1994년도 예산편성지침과 예산개요 참고자료를 보면 인건비(100목)는 기본급(101목), 수당(102목), 비정규직보수(103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급은 봉급과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으로 나뉘고 수당은 정액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과 기타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강사수당, 명예퇴직수당, 기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직 보수는 전문직, 청원경찰, 시보공무원 등으로 나뉜다. 통신사업특별회계 중 사업비에는 인건비로 기본급(101목)이 27.15%, 수당(102목)이 13.21%, 비정규직보수(103목)가 0.56%로 사업비의 40.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205목)는 물건비(200목)에 편성되어 있으나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

9) 일반관리비에 정무직 2명을 포함하여 일반직 305명, 기능직 108명, 전파사업비에 일반직 444명, 기능직 298명 등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다.

〈표 5〉 우정사업 인력 현황

(단위: 명)

	일반직	기능직	별정국	
			일반직 (사무원)	집배원 (기능직)
1급(1등급)	0(0.00%)	4(0.02%)	0	0
2급(2등급)	3(0.03%)	32(0.14%)	0	0
3급(3등급)	6(0.06%)	67(0.29%)	0	0
4급(4등급)	100(1.05%)	99(0.44%)	0	0
5급(5등급)	367(3.87%)	605(2.66%)	0	0
6급(6등급)	2,164(22.81%)	1,153(5.07%)	779	0
7급(7등급)	1,821(19.20%)	1,619(7.12%)	641	0
8급(8등급)	3,044(32.09%)	3,295(14.48%)	491	123
9급(9등급)	1,981(20.88%)	7,055(31.01%)	834	420
(10등급)	-	8,820(38.77%)	-	1,928
계	9,486	22,749	2,745	2,471

주1) ()는 등급별 구성비

자료: 체신부, 『1994년도 예산서(통신사업특별회계)』, 1994.

비, 연가보상비,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후생비 등 인건비성 예산으로서 사업비의 7.95%이다. 또한 업무추진비(204목)에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특정업무비(직급, 직책급) 등의 인건비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의 0.51%이다. 여비(202목)에는 사실상 인건비로 지출되는 월액여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상금(301목)계정 가운데 의료보험 부담금, 연금 부담금 등의 인건비성 예산이 사업비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서운영비(201목)는 사업비의 21.75%를 차지하고 있는데, 별정국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통근버스 임차료,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도급집배 수수료 등의 인건비 관련 비용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인건비성 비용은 사업비의 7.45%에 이른다.¹⁰⁾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와 인건비성 비용은

사업비의 약 60.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체신금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인 차입금이자(308목)은 사업비의 22.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사업에 직접 할당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인건비 비중은 약 78.29%를 점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정사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이 높아 임금비용의 상승에 약한 경영체질을 갖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1992년 예산 가운데 인건비성 비용이 약 85%를 점하고 있다.¹¹⁾

10) 관서운영비 가운데 우편취급수수료, 강사수당 등 인건비성 비용을 가진 수수료 등의 비용은 제외하였다.

11) 일반적으로 우정사업재정의 특징은 운영경비 가운데 인건비가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1992년 예산을 보면 우편사업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약 70%를 점하고 있으며, 물건비 중에 인건비성 경비(예를 들면 임금이나 집배운송업무 등의 위

〈표 6〉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비목별 예산)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코 드	예산금액	인건비 관련비용	구성비
기본급	101	332,155,446	332,155,446	27.15%(34.97%)
수 당	102	161,635,922	161,635,922	13.21%(17.02%)
비정규직보수	103	6,794,802	6,794,802	0.56%(0.72%)
관서운영비	201	266,000,531	93,297,464 ¹⁾	7.63%(9.82)
여 비	202	17,629,271	14,930,458 ²⁾	1.22%(1.57%)
업무추진비	204	8,512,665	6,261,469	0.51%(0.66%)
복리후생비	205	97,225,866	97,225,866	7.95%(10.24%)
연구개발비	206	1,853,303	0	0.00%(0.00%)
보 상 금	301	36,470,766	31,291,592	2.56%(3.29%)
배 상 금	302	40,501	0	0.00%(0.00%)
출 연 금	303	236,539	0	0.00%(0.00%)
민간경상이전	304	72,132	46,000	0.00%(0.00%)
차입금이자(A)	308	273,334,429	0	0.00%(0.00%)
자산취득비	407	3,828,202	0	0.00%(0.00%)
반환금기타	803	143,525	0	0.00%(0.00%)
감가상각비	705	17,288,801	0	0.00%(0.00%)
합 계(B)		1,223,222,701	743,639,199	60.79%(78.29%)
(B-A)		949,888,272	743,639,199	

주1) 별정국운영비,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통근버스임차료, 도급집배 수수료의 합계

2) 상시출장여비

자료: 채신부, 위의 글

2) 사업별 인건비 분석

사업비(우정사업비)는 다시 공통영업비와 우편영업비, 채신금융영업비, 수탁영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서에는 사업비별로 인건비가 구분되어 편성되지 않아 〈표 7〉과 같이 공통영업비의 96.12%가 인건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영업별로 인건비가 구분되어 편성되지 않은데서 기인한다.

비정규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건비가 공통영업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직과 기능직은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별정국 인원에

〈표 7〉 사업비별 인건비 비중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금액(A)	인건비 관련비용(B)	비율 (B/A)
공통영업비	656,608,857	631,126,051	96.12%
우편영업비	218,045,585	110,667,587	50.75%
채신금융영업비	328,889,468	1,764,145	0.54%
수탁영업비	2,389,990	81,416	3.41%

자료: 채신부, 위의 글

탁비 등)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인건비적 경비는 약 85%에 이른다. ぎょうせい, 『郵便事業 92』, 1992. 12, p.21.

대한 인건비는 관서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공통영업비와 우편영업비에 편성되어 있는 데, 우편영업비에 편성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인력은 총 26,180명으로 <표 8>과 같이 업무별로 나뉘어져 있다. 이를 통해 업무별 인건비 비중을 대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이와함께 <표 9>의 기능직의 직종별 구성비를 함께 고려하면 우체국창구 기능직 인력 대부분이 체신금융부분의 인력으로 보이며 이를 감안하면 우정사업 전체의 약 30% 정도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집배원의 보험영업 등 무시). 예산서에 나타난 별정국 인력은 총 216명이며 이중 국장이 779명, 사무원이 1,966명, 집배원이 24,711명 등 총 5,216명이다. 사무

원의 비중을 체신금융영업, 집배원을 우편영업 관련 인력으로 본다면, 체신금융영업 부분의 인력 비중이 약 40%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2. 체신공무원의 임금현황 분석

공무원의 명목임금은 1988년 이후 매년 년평균 10%이상 인상되어 왔다. 1986년이후 공무원 보수는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어 왔지만 가계비 상승률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¹²⁾. 공무원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이 낮다는 것은 상식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지속하여 어느 정도는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10>은 예산서에 나타난 체신공무원의 임금현황인데, 일반직과 기능직의 월평균 급여는 약 149만 2천 원이며 별정직의 월평균 급여는 약 138만 5천원 정도이다¹³⁾. 타부문과의 임금수준의 비교를 위한 자료를 산출해 보면(별정국 제외) 1992년 말 현재 32,865명의 근무년수는 약 11-12년, 연령은 약 36세 정도이다. 그리고 학력은 고졸이하가 1992년말 현원 32,865명 가운데 28,061명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¹⁴⁾. 임금수준은 일반적으로 생계비, 동일시장내의 임금수준, 기업내의 직종·직급간의 임금수준 등으로 비교할 수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임금수준을 공기업(정부투자기관)과 비교하고 있다.

<표 8> 우편영업비 상의 인력구성(5급이하)
(단위: 명)

구분	일반직	기능직	계	구성비
우체국창구	4,610	6,511	11,121	42.5%
우편발착	903	2,767	3,670	14.0%
우편집배	0	9,530	9,530	36.4%
우편운송	84	1,775	1,859	7.1%
계	5,597	20,583	26,180	100.0%
구성비	21.4%	78.6%	100.0%	

자료: 체신부, 위의 글

<표 9>기능직 직종별 구성
(단위: 명)

구분	인원	구성비	체신부	직할관서	지방체신청
전신	194	0.8%	4	167	23
우편	4,096	17.6%			4,096
집배	9,408	40.4%			9,408
운전	858	3.7%	12	60	786
계리	6,776	29.1%	21	224	6,531
기타	1,976	8.5%	79	189	1,708
계	23,308	100.0%	116	640	22,552

자료: 체신부, 우편통계편람, 1993.

12) 총무처, 『총무처 연보1993』, 1993. 7. pp.197-200.

13) 1994년도 통신특별회계 예산서를 기초(관보와 공무원보수규정, 수당규정 등 관련 자료 참고)로 계산된 것으로 앞서 인건비 분석에서는 포함시킨 급량비(특근 매식비), 여비월액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본급,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집배원특별보로금은 9,530명이 받고 있어 임금이 포함시켰다.

14) 체신부, 『체신통계 연보』, 1993.

〈표 10〉 체신공무원 임금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기본급	1) 상여금	2) 정액수당	3) 복리후생비	4) 초과근무수당	5) 기타	월평균 급여
일반·기능직	32,235	590.1	286.2	137.7	253.6	217.9	6.4	1,491.8
별정국 직원	5,216	604.6	295.4	136.3	265.2	76.5	7.5	1,385.4
평균(계)	37,451	592.1	287.5	137.5	255.2	198.2	6.5	1,477.0

주1) 기말수당, 정근수당-예산서상의 지급기준금액의 평균

2)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전기관리담당수당, 위험물취급주임수당, 자동차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대우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예산서상의 지급기준금액의 평균

3)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집배원특별보로금-예산서상의 지급기준금액의 평균

4)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예산서상의 지급기준금액의 평균

5) 공통영업비의 업무추진비-예산서상의 지급기준금액의 평균

자료: 체신부, 앞의 글

경제기획원, 『1994년도 예산편성기준』, 1993.

경제기획원, 『1994년도 예산개요 참고자료』, 1994.2.

〈표 11〉 별정국 직원 임금현황

(단위: 명, 천원)

직급	기본급	1) 상여금	2) 정액수당	3) 복리후생비	4) 초과근무수당	5) 기타	월평균 급여
국장(6급 23호봉)	948	474.0	160.0	316.2	179.6	50	2,127.8
사무장(7급 18호봉)	785	380.7	124.6	287.3	52.5	0.0	1,630.1
사무원(8급11호봉)	584.5	283.5	124.6	231.8	47.1	0.0	1,271.5
사무보조(9급6호)	425.5	206.4	124.6	203.7	42.2	0.0	1,002.3
집배원1종(기능직 8등급25호)	802.5	389.2	138.1	321.9	80.8	0.0	1,732.5
집배원2종(9등급20호)	675	327.4	138.1	299.3	72.5	0.0	1,512.2
집배원3종(10등급10호)	460.5	223.3	136.3	261.3	65.9	0.0	1,149.1

주1) 기말수당, 정근수당-예산서상의 지급기준금액의 평균

2)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전기관리담당수당, 위험물취급주임수당, 자동차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대우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예산서상의 지급기준금액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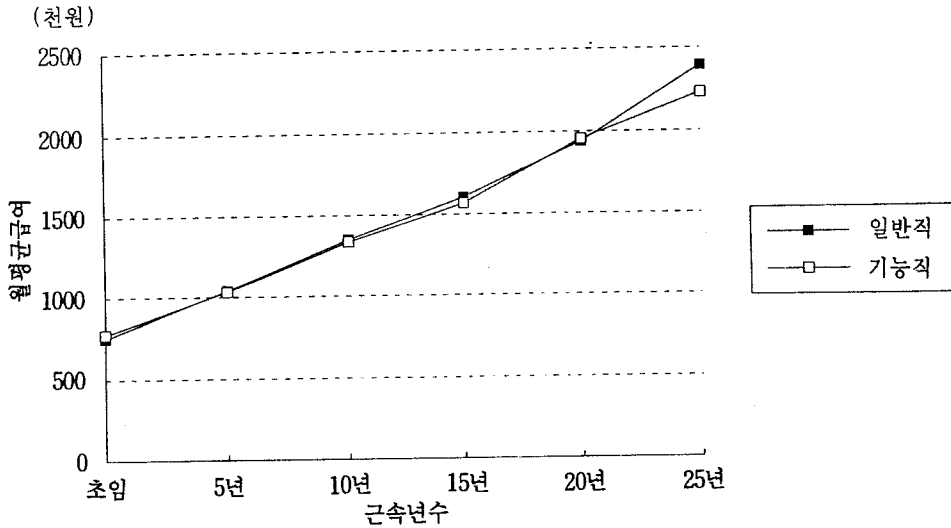
3)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집배원특별보로금-예산서상의 지급기준금액의 평균

4)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예산서상의 지급기준금액의 평균

5) 업무추진비-예산서상의 지급기준금액의 평균

자료: 체신부, 앞의 글.

[그림 2] 체신공무원의 근속년수별 임금변화



현업기관의 23%에 달하는 별정국 직원의 임금현황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표 11>와 같다. 별정국 직원의 임금은 1990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으며 1991년에 퇴직급여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연금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금과 관련하여 공사 전환시 별도의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체신공무원의 근속년수별로 임금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일반직은 초입(9급 1호)은 월평균 약 74만 8,600원으로 출발하여 25년 근속하면(5급 16호) 약 239만 3,500원으로 많아지게 된다. 기능직은 초입(10등급 1호) 월평균 약 77만 1,000원에서 25년 근속하였을 경우 약 223만 400원으로 많아지게 된다.¹⁵⁾ 일반직과 기능직의 근속년수별 임금의 차이는 승진제도와 정원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며 체신공무원 임금은 연공지향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인건비 변동요인 및 예산부담 분석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정부기업이 공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낮은 임금수준을 보전하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정사업 경영관리체계를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다른 공기업과의 비교에 의해 임금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¹⁶⁾. 그리고 임금상승의 내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인사관리제도의 변경 즉, 직종과 직급변경, 정원구조 변경 등의 과정을 통해 임금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

15) 직종별 평균 승진 소요년수는 체신통계연보(1993)의 자료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6) 이러한 가정의 근거로 1982년 전기통신사업의 공사 전환시의 자료를 들 수 있다. 공사의 임금수준을 타공사의 균형을 근거로 하여 정한 바 있다. 체신부,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 자료(2)』, 1988. 7. p.1025.

나 우정사업의 공사화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앞서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정사업의 특성상 집배원 등 기능직의 비중이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70%를 넘는 인력구조를 갖고 있어 다른 공기업(정부투자기관)과 임금수준을 학력, 근속년수, 직급 등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현실성을 갖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공기업(정부투자기관)간에도 현실적으로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데, 그 이유는 인력구조의 차이는 물론이고 경영상황이 다르다는 데 있다. 따라서 현재 우편사업부문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우정사업의 공사 전환시 재정수지 등 경영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요인을 전제로 하면 우정사업의 공사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예상하는 데에는 몇가지 가정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체신공무원과 다른 공기업(정부투자기관)과의 임금비교도 임금항목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기타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체신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간의 각종 수당의 차이는 직무·직책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임금구조(임금항목)을 중심으로 보면 공기업과 공무원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초과근무수당은 체신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을 하회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으나¹⁷⁾ 1994년부터 기존의 직무수당(기본급 40%)이 기본급으로 전환되었고 산정시간도 늘어나 월 73시간까지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공기업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보여진다. 기타 자녀학비 보조수당(공기업의 경우 전문대이상 2인이내 70-100%), 직원대출 등에서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수준 차이를 임금항목을 중심으로 본다면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율의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여금 지급기준금액은 공무원의 경우 직무수당(기본급의 40%)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차이는 현저히 해소되었다. 현재 공무원은 상여금 지급율이 연간 400%인데 비하여 공기업은 대략 550%(기본상여 300% + 경영평가에 따른 상여금 평균)로 연간 약 150%의 상여금 지급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지급율이 공기업과 차이가 있는 데, 공기업의 경우 250%인 데 비해 공무원의 경우 150%로 공기업에 100%가 낮다.

이와 같이 우정사업의 공사 전환시 임금인상 부담을 현재 체신공무원과 다른 공기업과의 임금비교를 임금구조(임금항목)를 중심으로 한다면 대체로 상여금과 체력단련비 지급율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우정사업의 공사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인상분을 현재 체신공무원과 다른 공기업(정부투자기관)과의 현재 상여금과 체력단련비 지급율의 차이만을 고려하면 공사화에 따른 우정사업인력의 임금인상 예상 금액은 약 554억 3,684만원 정도이다.¹⁸⁾

한편 인사관리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검토해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직

17) 최종태 외 8인 앞의 글, pp.99, p.200.

18) 계산방법은 37,451명(우정사업인력: 일반직, 기능직, 별정국직원 계) × 592.1천원(기본급평균) × 2.5(공기업직원과 공무원과의 상여금과 체력단련비 지급율 차이) = 55,436,842.75천원이다.

의 경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8등급 이하의 인력이 기능직 인력 전체의 약 84.26%를 차지하고 있어 직급이 새로이 설정될 경우 직급조정으로 인한 임금상승부분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82년 전기통신사업이 공사로 전환될 때, 조직을 제 1단계 효율적 전환을 위한 초기조직과 제 2단계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본조직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초기조직은 직급과 직종은 가급적 공무원법의 체계를 유지하되 1개 직급이 상향조정된 점¹⁹⁾ 등으로 생각하면 우정사업의 초기조직에서 인사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발생할 인건비부담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체신공무원 특히, 기능직 인력의 등급제도가 인력구조상 문제를 갖고 있어 이의 현실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의 공사화 관련자료에서 직급의 조정은 임금현실화(체신공무원과 다른 공기업과의 임금수준의 차이)를 감안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직급 조정이 임금현실화와 함께 고려되어 결국은 직급 조정의 결과가 임금현실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인사관리제도변경에 따른 별도의 인건비 상승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정사업 인력구조의 특성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배원을 비롯한 기능직은 타 부문과의 임금비교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력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만큼 인사관리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정원조정과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현재 기능직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등급 인력의 단순 9등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통해 개략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사관리제도 변경으로 인한 임금인상요

인 가운데 기능직 10등급의 단순 9등급화 부분만 고려하여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²⁰⁾. 현재 기능직 10등급의 예산서 기준호봉은 7호이므로 승진호봉 획정을 감안하면 9등급 6호봉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현행 기능직 10등급 7호의 임금과 기능직 9등급 6호의 차액이 기능직 10등급을 9등급으로 전환할 때의 임금인상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약 54억 2,834천원이다.²¹⁾ 별정국직원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약 13억 6,589천원이다²²⁾. 따라서 현재 예산서상의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능직 10등급을 9등급으로 전환할 경우 약 67억 9,423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앞서의 상여금지급을 차이로 인한 부분을 감안하면 약 74억 706만원의 인건비부담을 예상할 수 있을 것

19) 체신부, 앞의 글, pp.515-650, pp.695-707.

20) 최종태 외 8인 위의 글에서는 체신부 기능직 등급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현 10등급제를 3등급으로 개선할 것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능직 등급개선이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10등급의 단순 9등급화, 단일 호봉실시(6등급까지, 완전단일호봉), 전체 3등급화를 검토하였다. 이는 현재 체신공무원의 등급제도와 인력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로, 이 글에서는 3가지 방안 각각의 타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재 시점에서 인사관리제도의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인건비 변동 가운데 임금현실화(체신공무원과 다른 공기업과의 임금수준의 차이를 말함)에 더하여 인사관리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았다.

21) 51.3천원(기능직 9등급 6호 월평균 급여 - 10등급 7호 월평균 급여) × 12개월 × 8,820명(예산서상 기능직 10등급 인력) = 5,428,341천원이다. 초과근무수당은 월 73시간으로 계산하였다.

22) 59.0천원(기능직 9등급 10호 월평균 급여 - 10등급 10호 월평균 급여) × 12개월 × 1,928명(예산서상 집배원 3종 인원) = 1,365,893천원이다.

이다. 한편, 예를들어 앞으로 9등급인력 전원을 현재의 8등급 수준으로 전환할 경우에 발생할 인건비 상승은 10등급을 9등급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정도와 비슷한 수준의 인건비 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다.²³⁾

이를 종합하여 우정사업의 공사 전환시 인건비 추가부담을 1994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공기업과의 임금수준 차이를 기본급의 년 250%로 가정하고, 인사관리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현행 기능직 10등급을 9등급으로 단순 전환하는 부분만을 고려한다면 약 628억 4,390만원 정도이며 이는 1994년 예산 사업비(차입금이자 제외)의 약 6.62% 수준이다. 따라서 다른 항목의 변동이 없고 우정사업 전체가 공사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 비용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약 78.29%에서 약 84.9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V. 맺음말

우정사업은 그동안 공공성만을 강조된 결과 인력, 예산, 상품 등의 운영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약되어 비효율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편사업의 만성적인 적자누증의 문제를 가져왔다. 이러한 우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그 결과 최근 정부는 1997년부터 우정사업을 공사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 우정사업의 현황을 검토하여 우정사업의 공사 전환의 형식적인 틀에 제대로 담겨져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정리하여 보았다. 이어 우정사업의 세출예산중 사업비를 중심으로 인건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성 비용은 사업비의 약 78.29%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런데 사업별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 우편사업의 인건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었다. 다만 우정사업 전체의 인건비 비중이 약 78.29%이라고 하는 분석결과를 일본 우편사업의 인건비성 비용이 우편사업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85%)과 비교하면 단순히 인건비 비중이 높다, 낮다는 판단을 선부르게 할 수 없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정사업이 노동집약적 특성이 경영합리화에서 갖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타부문과 비교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체신공무원의 임금현황과 인사관리제도 변경을 중심으로 우정사업 공사화시 발생할 인건비 부담을 개략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비(차입금이자 제외)의 약 6.62% 정도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인건비 부담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정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재 체신공무원 인력관리제도(특히, 기능직 등급제도와 인력구조)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가시화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1997년 우정사업의 공사화를 전제한다면 새로운 직종 직급체계의 설계를 토대로 앞에서 수행한 분석과 이 글 분석에서 거의 비슷할 것으로 가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제수당, 자녀학자보조금 및 직원대출 등 복리후생 부분 그리고

23) 참고로 이 글 분석에는 예산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일반직과 기능직의 평균호봉과 인원을 기초로 하였다. 일반직은 2급 22호(3명), 3급 24호(6명), 4급 24호(100명), 5급 22호(367명), 6급 22호(2,164명), 7급 14호(1,821명), 8급 7호(3,044명), 9급 4호(1,981명) 등이며 기능직은 1등급 22호(4명), 2등급 23호(32명), 3등급 25호(67명), 4등급 25호(99명), 5등급 25호(605명), 6등급 23호(1,153명), 7등급 20호(1,619명), 8등급 18호(3,295명), 9등급 12호(7,055명), 10등급 7호(8,820명) 등이다.

퇴직금(연금포함)등에 대한 임금의 변동요인에 대해 보다 현실성있는 분석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고동희, 이진용, 최중범, 『우편주문판매 확충방안』, 통신개발연구원, 1992.
 고동희, 최중범, 『새로운 우편물 종별체계를 위한 가격이론 및 수요분석』, 통신개발연구원, 1993. 채신부, 『체신백서』, 1993.
 _____, 『대도시 우편물 배달의 효율성 제고 방안』, 통신개발연구원, 1992.
 김영곤 외 2인, 『우편사업의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통신개발연구원, 1990. 12.
 남찬기 외 2인, 『체신금융상품과 민영금융상품 비교분석 및 체신금융 경쟁력 향상방안』, 통신개발연구원, 1992.
 _____, 『외국의 국영금융 동향분석과 체신금융 발전방향』, 통신개발연구원 1992.

12.
 변정주 외 4인, 『우편물 종별비용분석』, 통신개발연구원, 1994.
 송대회, 『한국의 공기업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89.
 신동욱, 외 2인, 『우정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통신개발연구원, 1991.
 이진용 외 2인, 『우정사업 경영실태분석 및 합리화대책』, 통신개발연구원, 1991.
 채신부, 『1994년도 예산서』, 1994.
 _____, 『체신백서』, 1993.
 _____, 『체신통계연보』, 각년도.
 _____, 『결산보고서』, 각년도.
 총무처, 『총무처 연보』, 1993.
 최종태 외 8인, 『체신부 기능직 공무원 등급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정책연구(89-05), 통신개발연구원 1989. 5.
 최중범, 『정부기업으로서 우편사업』, 『통신정책연구』제 6권 4호, 통신개발연구원, 1991. 겨울.
 ぎょうせい, 『郵便事業 92』, 1992. 12, pp.21.